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관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ycjung@yulchon.com)

신원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wjshin@yulchon.com)

3

서론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누군가의 생명은 마땅히 소중하며, 당연히 최우선의 가치를 차지하여야 한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정책이 시행되기도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일각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른 한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접적인 수범자는 경영책임자 등이다.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막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할 때 누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2020년 중반부터 유사한 명칭의 법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연속적으로 발의되었다. 여러 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안으로 제안되었고, 2021. 1.경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행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그러나 이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2. 1. 27.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1년 또는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동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그 중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법 제4조 제1항, 제2항).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경 직업성 질병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영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기업 활동에 직, 간접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 이 중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현재 법제상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
산업안전보건법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첩경이 될 것이기에, 우선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표 1 산재사고 발생에 따른 주요 법률적인 쟁점

사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등
형사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행정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하도급 참여 제한 • 공공계약의 경우 국가(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감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영업정지
민사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등
기타 법률적인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 및 해제 • 피해자(유가족) 합의의 중요성 • 공공 입찰 참여시 건설안전 분야 심사에 따른 감점 여부 • 근로감독관의 정기감독 또는 특별감독 대상 포함 여부 • 공동수급체 관련 책임 분담에 관한 문제 • 사고 원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하도급 관계 법령 위반의 문제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부터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규정까지 총 16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175조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법률의 규정 자체가 방대한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대산업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그에 따른 처벌 관계를 개괄하고자 한다.

표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주체	대상	형사 처벌	민사책임
중대 재해 처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자 •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용역·위탁 등 제3자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손해액의 5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의 범위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

1. 목적

대부분의 법률은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법 제1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중대재해를 비교하자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부상자의 부상기간이나 질병자 수 등은 일부 차이가 있다.

3. 수범자

표 3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행위자 및 처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이 정하는 사업장 안전조치 의무 미 이행 및 그와 관련된 범죄 • 의무 주체: 사업주 • 행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장장, 현장 소장 등) • 양벌규정: 사업주 &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등 • 행위자: 경영책임자 등 •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다(법 제4조, 제5조).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법 제3조),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9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 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며(법 제6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고할 수 있다(법 제7조).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할 때,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안전조치, 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이에 따라 다수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4.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4조). 나아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5조). 만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6조 제1항),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게 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법 제6조 제2항).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할 때, 사업주가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할 때, 사망사고 발생과 같은 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하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

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판결 취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표 4 도급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의 주체	도급인(단, 건설 공사 발주자 제외)	도급인 일체
책임의 대상인 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장소
지배 및 관리 여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야 함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거나, 그러할 책임이 있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할 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5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결론

6. 기타 규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정해둔 것이다(법 제15조).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이외에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관련 이행 사항도 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또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지극히 타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정당하다.

법 제정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각 규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거나, 현실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주는 법률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법률은 제정되었고, 머지않아 시행될 예정이다. 현 시점은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여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글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떠한 법률인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2. 고용노동부,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